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소병훈·박 정·백승아

장철민 • 윤준병 • 정성호

윤건영 · 김준혁 · 안태준

허 영·박희승·안호영

김교흥 · 정준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.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.

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.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, 반면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

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,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, 법원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잠정조치 기간 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,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 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제9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 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9조제7항 단서).
- 나.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6 신설).

- 다.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연장,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(안제17조의7 신설).
- 라.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 7조의8 신설).
- 마.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7조의9 신설).
- 바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"제9조제1항제2호에"를 각각 "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제1호에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제9조제1항제3호에"를 "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제2호에"로 한다.

제9조제7항 단서 중 "두 차례"를 "세 차례"로 한다.

제17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, 결정, 집행 또는 취소· 기간연장·변경에 관한 업무

제2장의2(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0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

제17조의5(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)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·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으로 한다.

- 제17조의6(피해자보호명령 등)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 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 -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 - ③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.
 - ④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-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잠정조치"는 "피해자보호명령"으로 본다.
 -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
- 2.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
- 3.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· 귀가 시 동행
- 4.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
- 5.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⑧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, 기간, 절차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7(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 등)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

- 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-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
- 1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
- 2. 스토킹행위자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
- ⑤ 피해자보호명령(제3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1.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
- 2.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 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
- 3.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무죄·면소·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
- 제17조의8(임시보호명령)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
-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 7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자보호명령"은 "임시보호명령"으로 본다.
- 제17조의9(항고와 재항고) ① 스토킹행위자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.
 - 1.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
 - 2.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
 -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7조의10(위임규정)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위한 조사·심리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8조제2항 중 "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

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
- 2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제17조의6제2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의 임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자보호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6 및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	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긴급응급조치(제4항에 따라	6
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	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	2
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	
때(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	
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	
우로 한정한다)	
가.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	가
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	
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	
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	
거인, 가족으로 하는 <u>제9</u>	<u>제9</u>
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	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
의 결정	<u> 의6제2항제1호에</u>
나.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	나
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	

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의 주거 등으로 하는 <u>제9조제1항제</u> 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

다.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, 가족으로 하는 <u>제9</u> <u>조제1항제3호에</u> 따른 조치 의 결정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) ① ~ ⑥ (생 략)

⑦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u>제</u> 9조제1항제
2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
제1호에
다
제9
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
의6제2항제2호에
<u> </u>
조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<u>세 차례</u>
<u></u>
.

제17조의3(피해자등의 신원과 사 생활 비밀 누설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, 성명, 나이, 직업, 학교, 용모, 인적사항,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7조의3(피해자등의 신원과 사
생활 비밀 누설 금지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
명령의 청구, 결정, 집행 또는
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
<u>업무</u>
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
제17조의5(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
관할)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
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
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
행위지•거주지 또는 현재지

<신 설>

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.

- 제17조의6(피해자보호명령 등)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 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수 있다.
 - 1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
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
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 -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
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 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
 - ③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.
 - ④
 법원은
 피해자보호명령을

 결정한
 경우에는
 피해자 또는

 그
 법정대리인에게
 통지하여야

한다.

-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 레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잠정조치"는 "피해자보호명령" 으로 본다.
-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경

<u>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</u> 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 에서의 보호
- 2.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
- 3.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•귀가 시 동행
- 4.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 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 호
- 5.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⑧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, 기간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7(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등)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.
 - ②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 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

<신 설>

<u>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</u> <u>신청할 수 있다.</u>

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피해 자보호명령의 취소, 기간의 연 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 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 여야 한다.

-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
 가족, 그 법정대리인: 취소,
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
- 2. 스토킹행위자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
- ⑤ 피해자보호명령(제3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u>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</u> <u>한다.</u>

- 1.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 간이 지난 때
- 2.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검사

 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

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

 한 때
- 3.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대 하여 무죄·면소·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

제17조의8(임시보호명령)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수 있다.

② 임시모오병생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한다. 다만, 법원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<u>설></u>

<신 설>

-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 17조의7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자보호명령"은 "임시보호 명령"으로 본다.
- 제17조의9(항고와 재항고) ① 스 토킹행위자,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또 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.
 - 1.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

 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

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
 - 2.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경우
 -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 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 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.

제17조의10(위임규정) 피해자보호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(생략)

② <u>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</u>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0조(벌칙) ① ~ ④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결 정을 위한 조사·심리의 방법 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 해당하는

- -----.
- 1.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

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

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
- 2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

 죄를 저지른 사람
- 제20조(벌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제17조의6제2항의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